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 - 7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 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국제감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및 등록관리(안 제5조 내지 제6조)

- 국제감축사업 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을 관리하도록 규정

나.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및 등록(안 제7조 내지 제8조)

-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

다.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신고(안 제9조)

-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거래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안 제10조)

- 국제감축사업 수행자가 국제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규정

마. 국제감축실적 처분(안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 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바. 국제감축협약의체(안 제12조)

-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약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 국제감축사업의 수행(안 제1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아. 국제감축협약의체의 승인 등(안 제14조)

- 정부가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국제감축협약의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자. 역할분담 등(부칙, 안 제15조 내지 제21조)

- 국무조정실장 ·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행 업무, 취득한 정보의 비밀준수,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전담기관 지정, 업무 위탁, 권리 · 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인 등

3.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5일까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kw0123@korea.kr

2) 주소 : 세종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3층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우 30121)

3) 팩스 : 044-200-19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문의 사항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044-200-1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약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협정의 부속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
 - 나. 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
 - 다. 그 밖에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2. “국제감축 지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제감축 투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제감축 구매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감축실적"이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보고·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및 제거량을 말한다.
6.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란 국제 감축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자로서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란 영 제33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이 구성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8. "국제감축사업협의체"(이하 "국제감축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9.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타당성평가"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1. "모니터링"이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검증"이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검증기관"이란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

증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ISO 14065 인증 기관

나. UNFCCC 지정 기관

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라. 국제감축협약에서 지정한 기관

14. "국제감축등록부"란 영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

15. "계정"이란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국제감축사업 수행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보유계정, 처분계정으로 구분된다.

16. "발행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7. "보유계정"이란 정부 및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8. "취소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 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19. "처분계정"이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0. "국내 이전"이란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1. "국외 이전"이란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

법인·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 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회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23.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식품·임업 분야

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다. 환경부: 폐기물 분야

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건설 분야

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국제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협력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및 등록 관리

제5조(국제감축사업의 승인) 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 국문요약서

3.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

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국제감축사업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에서 승인한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승인한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관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의 세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전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 경우 국제감축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시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국제감축등록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시작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제감축사업 모니터링 수행 및 그 보고서에 관한 사항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감축협약체, 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직권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보완·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 수행자에게 보완·수정된 등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감축실적의 취득·거래·이전 등의 신고 및 등록

제7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2. 국제감축사업 감축량 배분과 관련한 서류
3. 그 밖에 영 제3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8조(국제감축실적의 등록 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된 국제감축실적과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신고) ①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거래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 이 경우 국제감축협약의 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의사 또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거래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국제감축실적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

1.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제10조(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국내로 최초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 신청서
2.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
 - 가.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나.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협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3.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

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②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1항 외의 사유로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감축실적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 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감축실적은 정부 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되며 환경부장관은 처분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수행

제12조(국제감축협의회) ① 정부는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지침의 제·개정
2.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인증유효기간 등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3.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4.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5.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제감축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외국정부와 협의에 따른다.

제13조(국제감축사업의 수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형의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정

부, 국제기구 또는 국내기업 등과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타당성조사,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감축협약의 승인 등) ① 정부는 정부가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국제감축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약이 승인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국제감축등록부에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역할분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개정
3. 국제감축심의회 구성 및 운영
4. 기타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한 사항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을 사업수행자가 신고한 경우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 및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
2.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 관리
3. 국제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서류 검토
4.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 접수 및 국내 최초이전 사전 승인
5.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국제감축심의회 위원의 지정 및 변경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
2.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한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3.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실적의 국내 최초이전 이외의 국내 이전 및 국외 이전 승인
2. 국제감축실적의 처분, 거래, 소멸 등에 이력관리
3. 국제감축등록부의 운영, 통계작성 및 관리

제16조(비밀 준수)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보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거나, 국제감축협의를 운영·하는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 정부와의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국제감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정부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측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고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9.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1. 기타 주무관청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인) ① 사업수행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사업수행자의 국제감측사업 및 국제감측실적에 대한 권리·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국제감측등록부에 등록한다.

③ 국제감측실적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는 양수인이 감측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감측심의회에서 조정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정개발체제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전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UNFCCC 사무국 및 청정개발체제 시행국가에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전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청정개발체제 시행국가로부터 전환 승인을 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정개발체제 시행국가에서 발급한 국제감축사업 전환 승인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차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수행한 청정개발체제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

제3조(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승인서(Letter of Approval)와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 관련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대상국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E-mail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 국문요약서 1부 3. 기타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국제감축사업 사후등록 변경 신청서

※ 사업계획서 변경 요청 시 작성

사 업 명			
사업자 명			
○ 사업계획 변경 항목			
☐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승인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내용 요약			
변경 전 내용 기술		변경 후 내용 기술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는 영향 기술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대상국	
사업수행자	
인증유효기간	
버전/ 작성일자	
사업 분야 및 적용 방법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2. 사업의 위치

1.3. 국제감축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구 분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 ₂ -eq	%
사업자 1			
사업자 2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	년 월 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교정)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2.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2.1. 적용 방법론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2.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2.3.1. 사업경계

2.3.2.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배출원		온실 가스	포함 여부	배출원 설명
베이스 라인 배출량	배출원 1	CO ₂		
		CH ₄		
		N ₂ O		
		...		
	배출원 2	CO ₂		
		CH ₄		
		N ₂ O		
		...		
사업 배출량	배출원 1	CO ₂		
		CH ₄		
		N ₂ O		
		...		
	배출원 2	CO ₂		
		CH ₄		
		N ₂ O		
		...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5. 추가성 입증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3.3. 누출량 산정식

3.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식

3.5. 타당성 평가 시 필요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데이터 단위	
설명	
데이터 출처	
적용된 값	
측정 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3.7.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년도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tCO ₂ -eq)	사업 배출량(흡 수량) (tCO ₂ -eq)	누출량 (tCO ₂ -eq)	온실가스 감축량 (순흡수량) (tCO ₂ -eq)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				
총 예상 감측량				
총 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평균 감측량				

4.모니터링 계획

4.1. 베이스라인 변동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데이터 단위	
설명	
데이터 출처	
적용된 값	
측정 절차	
모니터링 주기	
QA/QC 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5. 참고자료

※ (필요시) 감측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국의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각각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증빙자료 포함)

6. 사업자 정보

사업자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 전화	
담당자 이메일	

[별지 제3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 국문요약서		
사업 개요	사업명	· 영문명: · 국문명:
	사업 위치	
	사업 참여자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적용된 방법론	사업 규모 및 유형	☐ 단일(일반) 감축사업 ☐ 묶음 감축사업 ☐ 단일(소규모)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단일(극소규모)감축사업
	적용 방법론	· 방법론 명: · 방법론 버전:
	적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	
	추가성 입증 방법	
온실 가스 감축량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q/년)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세부 첨부 자료		· 등록된 영문 사업계획서 1부 · 등록된 영문 타당성 평가보고서 1부 ·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증명 관련 서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받기 위하여 상기의 정보 및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제 호

국제감축사업 승인서

- 사업자명 :
- 대표자 :
- 사업명 :
- 사업장 주소 :
- 등록고유번호 :
- 유효기간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3항에 의해 귀사에서 승인 신청한 국제감축사업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의 장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법인명 (사업수행자)		
사업명		
사업대상국		
감축실적의 종류	☐ 파리협정 제6.2조	☐ 파리협정 제6.4조
등록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 제출서류 - 국제감축사업 감축량 배분과 관련한 서류 -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국제감축실적 거래신고서					
거래 일시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 연도					
거래 구분		☐ 매도		☐ 매수	
감축실적의 종류		☐ 파리협정 제6.2조		☐ 파리협정 제6.4조	
거래 수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가격		총거래가격		단가	
양도자	법인명(개인명)				
	법인등록번호				
	계정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전화		E-mail	
양수자	법인명(개인명)				
	법인등록번호				
	계정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전화		E-mail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사실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장 귀 하					
※ 제출서류 1.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 공증서류					

[별지 제7호서식]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국내로 최초 이전 하는 경우)	
법인명 (사업수행자)	
사업명	
사업대상국	
등록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감축실적 이전 목적	☐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활용
	☐ 국제적 감축목적(CORSIA) ☐ 기타 목적(사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 제출서류 -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라 발행된 국제 감축 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협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해외로 이전 하는 경우)		
구 분	☐ 직접 사업을 수행한 자	☐ 매매 등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
법인명		
사업명	어두운 부분은 직접 사업을 수행한 자인 경우만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대상국		
등록고유번호		단일 감축사업 (일반) ☐ 단일 감축사업 (소규모) ☐ 단일 감축사업 (극소규모) ☐ 묶음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사업 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감축실적 이전 목적	☐ 타국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 국제적 감축목적(CORSIA) ☐ 기타 목적(사유 : _____)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 하		
※ 제출서류 1.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라 발행된 국제 감축 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3.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협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 이전의 경우)

법인명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감축실적 이전 목적	☐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활용
	☐ 기타 목적(사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 하

※ 제출서류

1.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라 발행된 국제 감축 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3.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협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별지 제8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서	
사 업 명	
사업자명	
평가(심의) 내용	
평가(심의) 일자	
평가(심의) 결과	
이의신청 사유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사 업 명	
사업자명	
평가(심의) 내용	
평가(심의) 일자	
이의 신청 사유	
검토 결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라 귀사(하)께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의 장 (직인) 귀하	